



## 정중호 | 계명대

### 1. 서론

고대 사회나 현재나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얼어붙게 만들며 경제의 흐름에 순간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금융체제에 익숙해있는 현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당연히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에 관한 성경 본문(출 22:25-27; 레 25:35-38; 신 15:1-11; 23:19-20)을 읽는 현대인들은 과연 이러한 법이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

1)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0106)

그런데 현대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에서는 이자금지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sup>2)</sup> 그리고 아프리카의 악성채무국가에 대해서 채권국가가 과감하게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부분적이지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sup>3)</sup> 이것은 지구촌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부도났을 때 혹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들이 합의해서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를 실시한 예가 있다. 주전 약 2350년 경 수메르 도시국가인 라가쉬(Lagash)의 왕 우루-이남기나에 의해 작성된 법에서 채무면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아테네에서 집정관으로 선출된 솔론이 주전 594년에 채무면제를 실시하였고, 고대 로마에서도 채무경감이 선포된 적이 있었다.<sup>4)</sup>

따라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조치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실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성경에 법령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이기에 실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을 살펴볼 때 좀 더 다각도로 구약에 나타나는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현실에서 실시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

2) 한덕규, “이슬람 세계와 이자금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3-1집 (2003), 146-159.

3) 권율, 박수경,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8집 18호 (2008. 5. 13), 1-4.

4) Jerrold S. Cooper, *Sumerian and akkadian royal inscriptions: presargonic inscriptions*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70-74; Marvin L. Chaney, “Debt Easement in Israelite History and Tradition,” in David Jobling et al (eds), *The Bible and the politics of exegesis: essays in honor of Norman K. Gottwald on his sixty-fifth birthday* (Cleveland: Pilgrim Press, 1991), 132-133.

지만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사례는 느헤미야의 경우이다(느 5:1-13). 그리고 고대 한국에도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무왕이 왕명을 내려 이자를 금지시키고 채무를 면제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자금지와 채무 면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느헤미야의 정책에 대한 논문을 발견할 수는 있었으나 문무왕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구나 느헤미야와 문무왕을 비교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다. 선행연구는 느헤미야와 문무왕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비평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선행 연구로는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사회적 보험의 원시적 도구’라고 주장한 글래이저(Edward L. Glaeser)와 샤인크만(José Scheinkman)의 연구,<sup>5)</sup> “느헤미야 5장: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다”고 주장한 기욤(Philippe Guillaume),<sup>6)</sup>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논평한 밀러(Marvin Lloyd Miller)를 들 수 있다.<sup>7)</sup> 또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정치적인 역학과 관련이 있고 특히 통치자의 권력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체이니(Marvin L. Chaney)의 주장,<sup>8)</sup>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쿠틀(R. B. Coote)를 비평적으로 연구하여 활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정신인 ‘형제애’를 강조한 샤인(Andrew Schein)의 주장도 주목하여 활용할 것이다.<sup>9)</sup> 마지막으로 문무왕의 정책에 대해 연구한 조법종의 연

---

5) Edward L. Glaeser and José Scheinkman,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An Economic Analysis of Interest Restrictions and Usury Law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1, No. 1 (April 1998), 1-36.

6) Philippe Guillaume, "Nehemiah 5: No Economic Crisis,"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0 (2010), 1-21.

7) Marvin Lloyd Miller, "Nehemiah 5: A Response to Philippe Guillaum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0, (2010), 1-7.

8) Marvin L. Chaney, *윳글*(1991), 128, 각주 6.

9) Andrew Schein, "Of biblical interest, brotherhood and ch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0 (2003), 788-797.

구를 분석하여 활용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헤미야와 문무왕이 시행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사건을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찾아 밝히면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동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동시에 계약법전과 신명기법전, 그리고 성결법전에 나타나는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법이 시행하기 힘든 이상적인 목표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사회 속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령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자금지(무상대여)와 채무면제(재난 대책)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현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약자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사회에서 가난한 이주민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셋째, 통일을 바라보며 경제적으로 차이는 나는 남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본 연구가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느헤미야의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구약에서 실제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조치를 실행한 경우는 느헤미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느 5:1-13). 느헤미야에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내용이 4장과 6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채무탕감에 대한 약속과 실천 내용이 들어있다. 아마도 성곽 건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힘든 면도 있었지만 세금 부담도 과중하고(느 5:4) 기근이 덮쳐

---

10) 조범중,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 16 (1999), 91-118.

고리대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느 5:3).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배후에는 당시 국제정치와 국제무역의 요인도 있었다. 즉 느헤미야의 개혁적이며 독립적인 정책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인 면에서 고립을 면치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이 타격을 받게 되었고 유대 전체가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났다.<sup>11)</sup>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세력가와 부자들은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강도를 더욱 높여갔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불만을 제기하고 원망한 ‘백성(בְּעַמּוֹת)’은 유대 형제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홀대받고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sup>12)</sup> 그리고 불만을 들어야했던 ‘유대 형제’는 사회경제적 엘리트이며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부르짖었다. 아마도 많은 남자들이 성벽건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가정경제를 아내들이 이끌어 가야하는 상황에서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1) 자녀가 많아 양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2) 기근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저당 잡혀 곡식을 빌렸다는 것, 3)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느 5:2-4). 그리고 이미 딸이 노비로 팔려갔다는 사실과 이렇게 노비로 파는 사람들이 유대인 형제라는 사실을 들면서 어떻게 같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원망하였다(느 5:5).

부르짖는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 자녀가 많아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11) F. Charles Fensham,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2), 190.

12) Philippe Guillaume, *원문*, 4.

토지가 없고 임노동자로 생계를 꾸려갔던 사람들로 보인다. 하루하루 벌 어 생계를 유지했던 가장들이 성벽 건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막하였고, 저당 잡을 토지도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증물로 넘겨주거나 혹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sup>13)</sup> 2) 토지와 건물을 저당 잡혀 곡식을 빌린 그룹은 흉년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나 굶주리고 있었던 그룹이었다. 3) 마지막으로 세금 때문에 토지를 저당 잡힌 사람들은 굶주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소 여유가 있는 그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과중한 세금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 채무노비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사실에 대해 책망하였다. 여기에서 ‘민장(מִנְצָח) 사간’이란 성벽 건축을 위해 징집된 백성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귀족들과 더불어 유대 사회의 부유한 세력가들이라 볼 수 있다.<sup>14)</sup> 그다음 느헤미야가 시행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11절의 애매한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 11절의 מֵאֵר (메아)를 「개역개정」에서는 ‘백분의 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는 MT에서 찾아볼 수 없다.<sup>15)</sup> 그리고 100분의 일, 즉 매달 1%의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고대 중동에서 이와같은 낮은 이자율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노이펠트(Edward E. Neufeld)는 여성명사형인 מַשָּׂא (마샤)로 수정하여 읽는 것을 제안하였다.<sup>16)</sup> 즉 필사자의 실수로 ׀자가 탈락되었다고 보면서 단어를 수정한 것이다. 이 단어의 기본형은 נַשָּׂא (나샤)로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라는 뜻이다. 남성 명사형 מַשָּׂא (마샤)도 동일한 뜻이며 7절과 10절에 나타나

13) H. G. M. Williamson, 조호진 역, 「에스라 · 느헤미야」(솔로몬, 2008), 454.

14) H. G. M. Williamson, 윗글, 439.

15) Edward E. Neufeld, "The rate of interest and text of Nehemiah 5:11," *Jewish Quarterly Review* 44 (Jan., 1954), 199-200.

16) Edward E. Neufeld, 윗글 (Jan., 1954), 200.

는데 ‘고리대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수정하여 읽을 때 11절 전반부는 원금인 토지와 집을 돌려주라는 것이고 11절 후반부는 이자를 돌려주라는 뜻이 된다.<sup>17)</sup> 이렇게 수정하여 11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취한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이자를 돌려주라”<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사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단어 수정을 거부하면서  $\pi\alpha\sigma\iota\varsigma$ (메아)를 ‘백분율(percentage)’이라 번역하면서 그 의미는 ‘이자’라는 것이다.<sup>19)</sup> 비록 번역에 있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가능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11절 후반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너희들이 취한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백분율(이자)을 돌려주라”. 따라서 굳이 본문의 단어를 수정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통하는 윌리엄슨의 번역을 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 차압한 토지와 주택을 돌려보내고 이자로 받은 돈과 물품들도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 맹세하게 하였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채무탕감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양식이 부족하여 돈과 양식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토지와 건물을 차압당하고 자녀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느 5:10)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자와 원금까지도 받지 말고 받은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고 하였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10절에서 느헤미야의 ‘형제’는 느헤미야의 친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느헤미

17) Edward E. Neufeld, *윗글* (Jan., 1954), 200–201.

18) *NRSV*도 동일하게 번역함; Restore to them, this very day, their fields, their vineyards, their olive orchards, and their houses, and the interest on money, grain, wine, and oil that you have been exacting from them.

19) H. G. M. Williamson, *윗글*, 448, 459.

야의 ‘종자들(עֲרֵבִים) 느아림’)은 느헤미야에게 충성한 훈련된 소그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20)</sup>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밭을 탕감하리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때마다 채무 전부를 면제하리라고 약속하였다. 느헤미야는 일회성의 채무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과연 느헤미야는 굶주림과 채무과중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만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충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느헤미야는 다양한 정치적 과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가 느헤미야를 유다에 파견한 이유는(주전 445)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주전 465-424)가 즉위하는 틈을 타서 그리스(아테네)의 협조하에 일어난 이집트의 이나로스(Inaros)의 반란을 힘겹게 진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주전 455).<sup>21)</sup> 유다는 이집트를 방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요충지였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직접 지원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인 도비아, 아랍인 게셈, 아스돗 사람 등이 반대 세력이었다(느 2:10, 19; 4:7).<sup>22)</sup>

느헤미야는 이들 반대세력들과 유대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별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형제애로 뭉친 유대 사람들의 공

---

20) H. G. M. Williamson, *유태*, 438-439.

21)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2001), 296.

22) Gary N. Knoppers는 유다의 적을 “외부”(without)와 “내부”(within)로 구별하여 ‘도비아’와 ‘산발랏’을 내부의 적으로 보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도 ‘고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ary N. Knoppers, “Nehemiah and Sanballat: The Enemy Without or Within?” in Oded Lipschits & Al.,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305-331.



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반대 세력의 침투와 농간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 3. 문무왕의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를 평정하여 삼국을 통일한 직후 669년(문무왕 9년) 범죄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원금과 이자 모두를 면제하는 채무탕감의 왕명도 함께 내렸다.

문무왕이 내린 왕명을 살펴보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곡식을 빌린 경우에, 흉년이 든 지방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탕감하도록 하였고, 풍년이 든 지방에는 원금만 갚고 이자는 면제해 주었다.

...백성들이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 쓴 사람으로서 흉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필요가 없고, 풍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곡식이 익을 때에 이르러 단지 원금만 갚고 그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담당 관청에서는 받들어 행하라.<sup>23)</sup>

그런데 이러한 왕명은 파격적이었고 곡식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문무왕은 채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해 5월에 고위 관등자들에게 국가 소유로 되어있었던 말 목장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4년 후인 문무왕 13년에 반란이 일어났다. 아찬(阿飡) 대토(大吐)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초기에 진압되었다.<sup>24)</sup>

23)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9년 (AD 669).

24)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3년 (AD 673). 아찬 대토가 모반하여 당에 붙으려 하다가 일이 탄로나 목베여 죽임을 당하고 처와 자식들은 천인(賤人)으로 만들었다.

아찬 대토의 반란을 살펴보면 당의 충동질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문무왕의 채무면제령에 대한 귀족들의 불만세력이 이러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짐작된다. 채권자들의 불만과 귀족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채무면제령을 내린 것은 문무왕의 왕권이 강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하다. 그리고 왕의 주도로 이러한 채무면제를 시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문무왕은 왜 채무면제령을 내렸는가?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었다. 전쟁을 위해 백성들을 징집하여 군대를 만들었고 부역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과중한 세금도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고통이었다. 특히 당나라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라는 막대한 전비를 제공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문무왕은 “일만 명의 중국 병사들의 4년 동안의 의식을 신라가 담당했으니 유인원이하 주둔 당병의 피부와 뼈는 중국에서 생겨났지만 피와 살은 신라가 모두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sup>25)</sup>

삼국통일을 위한 전쟁으로 과중한 부담을 담당해야 했던 백성들의 피폐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누에치는 여인은 뽕따는 시기를 놓쳤고 김매는 농부들은 밭갈이 할 시기를 잃었다... 과부 가 곡식을 나르고 어린아이가 밭을 간다”<sup>26)</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과 부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범법자가 되는 일도 일어났다. 특히 가난하여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경우 채무노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었다.<sup>27)</sup> 예를 들면 어떤 재상가에는 노비가 3,000명이나 되는

---

25) 조법중,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 16 (1999), 113.

26)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27) 조법중, 『뫼글』(1999), 116.

경우도 있었다.<sup>28)</sup> 양민이 채무로 인해 노비로 전락하는 숫자가 많아질 수록 세금을 내는 양민의 숫자가 감소되어 국가재정에 타격을 주게 되며 사회통합 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무왕은 사회 통합을 위할 뿐만 아니라 국가조세 측면에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백성들을 위한 채무면제 조치가 시급히 필요했던 것이다.

문무왕이 시행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조치는 곡식을 빌려준 귀족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지만 기존의 경제체제를 정화시키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즉 기존의 경제를 뒤엎어버리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경제체제를 강화시키는 조치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귀족들의 경제력과 세력은 약화되고 왕의 명성은 높아지며 왕권은 강화될 수 있었다. 이자놀이를 통해 획득한 수많은 채무노비를 거느리고 있는 귀족들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의 세력을 견제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수입의 원천이 되는 이자놀이를 과감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귀족들의 불만은 아찬 대토의 반란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었지만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오히려 강력한 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 4. 문무왕과 느헤미야 비교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성벽 건축으로 인한 임노동자 가족의 생계문제, 흉년으로 인한 기근, 과중한 세금부담 등이 원인이 되어 채무자가 된 경우이고, 문무왕의 경우에도 전쟁 후 부녀자만 남아 농사짓는 상황, 흉년으로 인한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세금과 부역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채무자가 된 경우로서 서로 비슷한 원인으로 백성들이 채무자

---

28) 「신당서」 220 열전 145 등이 신라.

가 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 채무노비가 되는 상황도 비슷하다.

이렇게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통치자가 나서서 이자금지과 채무탕감을 실시한 것도 동일하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연적으로 혹은 저절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채권자인 귀족들과 세력가들이 순순히 순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처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였지만 그 즉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대회를 열어 온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비로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신라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저항이 있었다. 비록 문무왕이 목장지를 채권자들에 분배해주는 당근정책까지 동원하여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아찬 대토의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물론 그 반란은 조기에 문무왕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자금지과 채무면제 정책으로 인해 가난하고 절박했던 채무자들은 도움을 받았지만 채권자들인 귀족과 세력가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통치권도 강화되었고 문무왕의 왕권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양양되었고 사회통합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의 경우 대회를 열고 회중과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야웨를 찬송하는 모습에서 전체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느 5:7, 13). 이러한 모습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채무자 뿐 만 아니라 재물을 빌려준 채권자들 모두가 형제애를 공감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sup>29)</sup>

결과적으로 굶주리며 빚을 갚지 못해 채무노비가 되는 것을 통치자가 방관할 수 없으며 개입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면에서 이해득실을 따

---

29) H. G. M. Williamson, *룻글*, 461.

저볼 때도 통치자들은 한 번 해볼 만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경우와 느헤미야의 경우 모두 이자금지과 채무면제는 충격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했고 또 통치권 강화와 사회통합 면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 5.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동기와 목표

###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이자금지과 채무면제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무상대여의 전통은 고대 이스라엘의 서로 도와 상부상조하는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작물과 목축을 겸하여 경영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소농가들은 혈족 집단 안에서 혹은 촌락단위로 서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를 해 주었던 관행이 있었다.<sup>30)</sup> 이러한 관행은 사회적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가뭄이나 메뚜기떼의 습격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언제 누가 흉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sup>31)</sup> 때로는 친족에게 받을 팔기도 하였다. 물론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말이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도 이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토지를 은 17세겔을 주고 매입하였다(렘 32:6-15). 그런데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즉 사촌인 하나넬의 밭을 산 것이다. 이것은 하나넬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친족인 예레미야가 그 밭의 ‘이용권’

---

30) B. Lang, *Monotheism and the Prophetic Minority : An Essay in Biblical History and Sociology* (Social World of Biblical Antiquity: Sheffield, 1983), 120.

31) Marvin L. Chaney, *윗글*, 238, Edward L. Glaeser and José Scheinkman, *윗글*, 1-36.

을 매입하면서 돈을 친족에게 주는 경우였다.<sup>32)</sup> 레위기의 희년 규정(레 25:23-34)을 보면, 만일 장래 하나멜이 돈을 준비하게 되면 그 밭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년에는 무상으로 하나멜의 수중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전쟁 상황인데 밭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었다(렘 32:2). 따라서 일반 토지 매매의 상황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친족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방식이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도우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sup>33)</sup>

글라이저와 샤인크만(Edward L. Glaeser and José Scheinkman)은 이자제한을 ‘사회적 보험의 원시적 도구’라고 주장하였다.<sup>34)</sup> 그리고 이자제한이 가해진 대여는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일종의 생존대여인 ‘소비대여(consumption loan)’에 국한된 것이라 하였다.<sup>35)</sup>

백성이 굶주리고 빚을 갚지 못해 토지와 가옥을 차압당하고 급기야 채무노비가 되고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혹은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 있는 상황이며 특단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러한 파국은 막아야 하고 인정적인 면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생존에 위협을 당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특단의 조치로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지며 이것이 이 정책의 기본적인 의도요 목표다. 계약법전

32) 박동현, 「예레미야 II」,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7.

33) 그리고 당시 예레미야가 이러한 행동을 한 보다 더 큰 이유를 살펴보면, 유다가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렘 32:15). R. P. Carroll, *Jeremiah*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JSOT Press, 1989), 620-623.

34) Edward L. Glaeser and José Scheinkman, *빚과*, 3.

35) Edward L. Glaeser, *빚과*, 3, 20.

(출 22:24-26)과 성결법전(레 25:35-38) 모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 정책을 실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무왕의 경우도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 정책을 실시하였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외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고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목표가 절박한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담은 채권자들인 부자들이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경우는 통치자인 자신도 그 부담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통치자가 혹은 국가가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부담을 지는 모습은 고대 한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한국에서는 국가의 임무를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국방의 책무를 다하는 것과 흉년이 발생할 때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라 여겼다.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으로는 국가가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 혹은 춘궁기에 종자와 곡식을 백성에게 대여 해주고 추수 때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여의 경우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리로 대여를 해주었다.

이러한 구휼정책은 삼국시대부터 실시되었는데,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 을파소를 시켜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했으며, 신라에서는 점찰보(占察寶)가 설치되었다. 고려에서는 태조 때 흑창(黑倉), 성종 때 의창(義倉, 986년), 그리고 상평창(常平倉, 993년) 등을 두어 진휼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환곡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휼을 실시했으나 차이나는 점은 이제까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실시했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제도로 정착시켜 연속적으로 구휼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이다.<sup>36)</sup> 국가가 구휼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농업 재생산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농촌의 경제적 안정 위에서 정상적인 조세수취를 하기 위해서였다.

---

36) 환곡제도가 정부 주도로 구휼정책을 실시하는 훌륭한 제도였지만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큰 비극이었다.

중요한 것은 환곡제도에 정퇴(停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흉년 때 백성이 빌려간 곡식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정부가 정퇴령을 내려 원곡과 이자적인 모곡 수납을 유예하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즉 흉년 때 환곡의 경우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시행되었다.<sup>37)</sup>

## 2) 정치적 목표를 위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느헤미야와 문무왕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주전 약 2350년 경 수메르 도시국가인 라가쉬(Lagash)의 왕 우루-이남기나에 의해 작성된 법의 제 11항에는 “채무자로 살고있는 라가쉬 거민들을 위해 부채를 청산했고 면제했다”고 하면서 채무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sup>38)</sup> 우루-이남기나 법 선포는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세력가들을 견제하면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9)</sup> 이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을 미샤룸(Misharum)이라 불렀다. 미샤룸은 사회의 경제적 기능 부전(不全)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면제도 포함하고 있다.<sup>40)</sup> 미샤룸 칙령을 선포하면서 채무관계가 기록된 서판(점토판)을 깨뜨리면서 채무면제를 공포하기도 하였다.<sup>41)</sup> 그리고 미샤룸 선포는 왕이 등극했을 때 혹은 재위 기간 중 몇 차례 걸쳐서 행하기도 하는데 전적으로 왕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테네에서 집정관으로 선출된 솔론은 주전 594년 경제개혁을 주도하였는데 채무관계를 완전히 무효화 시키고 채무노비제도를 금지시

37) 최병선, 조병훈, “다산의 부패와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환곡제도를 둘러싼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07 No.0 (2007), 8.

38) 이종근, “수메르 우루-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 고찰,” 「구약논단」 28집(2008), 148.

39) 이종근, 윗글(2008), 160.

40) 이종근, 윗글(2008), 149.

41) 이종근, “히브리 성서의 희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 제도,” 「구약논단」 1집 (1995), 75-90.



킨 적이 있었다.<sup>42)</sup>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도 파당들 간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채무경감이 선포되었다.<sup>43)</sup> 호민관 리시니우스와 섹스티우스 시대에는 채무상환을 완화하고 채무노비 매매를 금지한 적도 있었다.<sup>44)</sup> 이들은 노비 해방에 중점을 둔 조치라 할 수 있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채무면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자금지과 채무면제는 권력이 있는 통치자의 결단에 의해 시행된 것이며 경제적인 목표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표가 우선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기욤(Philippe Guillaume)은 “느헤미야 5장: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다(Nehemiah 5: No Economic Crisis)”라는 논문에서 느헤미야의 경우를 분석하면서 경제적인 이슈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슈라고 주장하였다.<sup>45)</sup> 그는 느헤미야의 경우가 채무로 인해 야기된 것을 해결하려는 경제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채무탕감의 동기와 의도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느헤미야 5장은 통치자인 느헤미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고, 외국인(고임)과 유대인을 분리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라 주장하였다.<sup>46)</sup> 신명기 법전(신 15:1-3; 23:20-21)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유대인 ‘형제’로부터는 이자를 받지 말되 외국인(고임)으로부터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형제’와 외국인을 구분하였다. 기욤(Pilippe Guillaume)의 논문을 논평한 밀러(Marvin Lloyd Miller)는 기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경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47)</sup>

42)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2.

43)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3.

44)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4.

45) Philippe Guillaume, *윗글*, 3, 17.

46) Philippe Guillaume, *윗글*, 3.

47) Marvin Lloyd Miller, “Nehemiah 5: A Response to Philippe Guillaume,” *Journal of Hebrew*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에 대한 이와 유사한 시각은 체이니(Marvin L. Chaney)가 그의 논문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에 나타난 채무 경감정책 (Debt Easement in Israelite History and Tradition)”에서 채무 경감 정책이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시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가 각주에서 한국의 예를 들면서 논문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48)</sup>

쿠트(R. B. Coote)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쿠트는 계약법전을 여로보암 1세가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J 문서를 개작한 것이라 보았다.<sup>49)</sup> 여로보암 1세는 다윗 왕가와 결탁하여 채권자가 된 계약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왕국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북왕국의 세력가와 지주들의 권한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다. 결국 여로보암 1세의 채무경감 정책은 새로운 왕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선포된 것이라 주장하였다.<sup>50)</sup>

또한 쿠트는 출애굽기 22장 25-27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첨가부분이라 보았다.<sup>51)</sup>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지출된 막대한 국방비로 인해 농민들이 가난하게 된 상태에서 지방 채권자들을 약화시키고 빚에 몰려 있던 농민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sup>52)</sup>

그리고 쿠트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장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을 때 부채경감을 발표하여 다수의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지방의 정적들인 세력가들의 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였

---

Scriptures 10, (2010), Article 13, 2-7.

48) Marvin L. Chaney, *윗글*(1991) 128, 각주 6.

49) R. B. Coote, *In Defense of Revolution: The Elohistic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5, 각주 27.

50)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5-136.

51)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6, 각주 32, R. B. Coote, *윗글*(1991),

52) Marvin L. Chaney, *윗글*(1991), 136.

다.<sup>53)</sup>

쿠트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과연 계약법전을 여로보암 1세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과 출애굽기 22장 25-27절을 히스기야 시대의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신명기의 것을 요시야 시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트의 주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려는 왕 혹은 통치자들이 채무경감의 특별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은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경제면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것이고 순간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정책이다. 동시에 빈부격차의 심화나 채무노비화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쇄신 정책으로 기존 경제의 부전(不全)을 치유하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극약처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실시하려면 권력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실시해야 가능한 것이다. 보통 새로 왕조를 창건하거나 새롭게 왕위에 등극한 왕이 백성들에게 정의롭고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롭게 부상한 개혁세력들이 백성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왕이 실시할 때도 귀족들을 견제하거나 정적들을 견제하기 위한 왕권강화의 의도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혁세력들도 세력을 확보하고 나면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채무에 시달리는 가난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일회성이고 단기간에 실시되는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로 인해 조금은 숨을 돌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다 더 근본적

---

53) Marvin L. Chaney, *윳글*(1991), 136-137. 쿠트는 신명기 가운데 요시야의 개혁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신 15:1-18; 23:19-20(BHS 20-21절); 24:6, 10-13, 17-18. Marvin L. Chaney, *윳글*(1991), 229.

인 대책이 되려면 제도화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제시한 7년마다 혹은 50년마다 실시되는 면제년과 희년이 바로 제도화된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제도로 정착이 된다면 부자들이 더 이상 가난한 백성을 이용해서 치부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즉 흉년 때 빌려준 것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차압한다거나 채무노비로 만들어 재산을 증식하는 수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빌려준 돈은 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실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제도적으로 7년마다 혹은 50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례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되기는 어려웠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 3) 형제애와 사회통합의 목표

샤인(Andrew Schein)은 이자제한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채권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자제한은 공동체적 정신인 ‘형제애’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54)</sup>

신명기의 경우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면제년도 지키라고 하였으나 외국인으로부터는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신 23:20-21). 따라서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자금지와 면제년의 정신은 ‘형제애’ 정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형제’의 범위에는 이주자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혈연적인 형제라기보다 ‘신정적(神政的) 형제애(theocratic brotherly love)’라 할 수 있다.<sup>55)</sup>

공동체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형제애를 실천한다면 형제가 곤궁함을 기회로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제애를 실천한다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54) Andrew Schein, *위클리*, 788-797.

55) Edward E. Neufeld, *위클리*, 195.

데 이자를 받는다면 그것은 적군의 행동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사실 돈을 빌려주고 과도하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동등성이 파괴되고 형제애를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언제나 채무자보다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고 하였다. 채권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형제의 동등성이 파괴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법전에는 돈을 빌려주되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출 22:25)고 충고하고 있다.

원금을 돌려받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출 22:26)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은 ‘형제애’라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켜 주고 계신다는 점이다.

형제애를 손상시키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부터 현금이나 곡식 등을 직접적으로 적선을 받는다면 경제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존심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든가(레 19:9, 10; 23:22; 신 24:19-22)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형제애라는 덕목과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도우는 자선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백성들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고 사회통합을 만들어야 하는 통치자가 시행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력가들을 견제할 수 있으니 통치자로서는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노비가 되지 않도록 양민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현 경제체제와 사회체제를 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처럼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주기적으로 시행된다면 과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 충분하게 돈과 물자를 빌려주겠는가 하는 것이다.<sup>56)</sup> 신명기에서도 면제년을 시행할 때의 반작용을 염두에 두고 부자들이 대여해주지 않으려는 점을 감안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하게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신 15:7-11). 한편 이러한 반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즉 대여 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실제로 1세기의 랍비 힐렐은 면제년인 7년째가 되어도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를 별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sup>57)</sup> 그러나 앞서서도 분석해보았듯이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기존의 경제의 병폐를 치유하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며, 통치자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형제애를 표현하며 사회통합을 강화시키는 방식이기에 현실세계에서도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라는 치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제도는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통치자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 6. 결론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자를 금지하고 채무를 면제하라는 법이 있었고(출 22:24-26; 레 25:35-38; 신 23:20-21) 7년마다 빌린 것의 원금도 면제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면제법도 있었다(신 15:1-3). 일상적인 경제관계를 일거에 얼어붙게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법이 과연 지켜졌는

56) Andrew Schein, 윗글(2003), 791.

57) 윗글.

지 혹은 실제로 현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이러한 법을 실시한 느헤미야의 경우(느 5:1-13)와 신라 문무왕의 경우를 세밀히 분석 비교하여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동기가 무엇이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추적하였다.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동기와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난하고 굶주려 생존을 위해 빚을 얻었으나 흉년을 비롯한 재난을 만나 생활 능력이 없어 채무노비가 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자를 금지하고 채무를 면제하였다. 2) 통치자가 정적을 약화시키고 왕권 혹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3)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공동체의 '형제애'를 나타내는 방식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도우는 자선의 방식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경제논리만 따른다면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를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면과 사회통합 면을 본다면 현실 상황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는 기존의 경제의 병폐를 치유하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라는 치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 공동체 구성원이 이 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라는 극약처방을 경제체제 전체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병을 부분적으로 치유하듯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실시할 수도 있기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며 경우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7. 참고문헌

「삼국사기」

「신당서」

박동현, 「예레미야 II」 (대한기독교서회 2006).

이종근, “수메르 우루-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 고찰,” 「구약논단」 28집(2008) 142-161.

\_\_\_\_\_,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38집 (2010), 157-186.

\_\_\_\_\_, “히브리 성서의 회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람 제도,” 「구약논단」 1집 (1995), 75-90.

조법중,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 16 (1999), 91-118.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2001).

최병선, 조병훈, “다산의 부패와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환곡제도를 둘러싼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07 No.0 (2007), 1-31.

Biddle, Mark E. “The Biblical Prohibition Against Usury,” *Interpretation* (2011, April) 117-127.

Carroll, R. P. *Jeremiah*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JSOT Press, 1989).

Chaney, Marvin L. “Debt Easement in Israelite History and Tradition,” in David Jobling et al (eds), *The Bible and the politics of exegesis: essays in honor of Norman K. Gottwald on his sixty-fifth birthday* (Cleveland: Pilgrim Press, 1991) 127-139.

Cooper, Jerrold S. Sumerian and akkadian royal inscriptions: presargonic inscriptions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Coote, R. B. *In Defense of Revolution: The Elohistic History*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91).
- Fensham, F. Charles,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2).
- Gamoran, H. "The Biblical Law against Loans on Interest," *JNES* 30 (1977) 127-134.
- Glaeser, Edward L. and Scheinkman, José.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An Economic Analysis of Interest Restrictions and Usury Law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1, No. 1 (April 1998), 1-36.
- Guillaume, Philippe. "Nehemiah 5: No Economic Crisis,"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0 (2010), 1-21.
- Knoppers, Gary N. "Nehemiah and Sanballat: The Enemy Without or Within?" in Oded Lipschits & Al.,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305-331.
- Lang, B. *Monotheism and the Prophetic Minority : An Essay in Biblical History and Sociology* (Social World of Biblical Antiquity 1: Sheffield, 1983)
- Maloney, Robert P. C.M., "Usury and restrictions on interest-taking in the ancient Near East," *CBQ* 36 (1974), 1-20.
- Miller, Marvin Lloyd. "Nehemiah 5: A Response to Philippe Guillaum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0 (2010), Article 13, 1-7.
- Neufeld, Edward E. "The rate of interest and text of Nehemiah 5:11." *Jewish Quarterly Review* 44 (Jan., 1954), 194-204.
- Schein, Andrew. "Of biblical interest, brotherhood and ch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0 (2003), 788-797.

Williamson, H. G. M. 조호진 역, 「에스라 · 느헤미야」 (솔로몬,  
2008).

[www.kci.go.kr](http://www.kci.go.kr)

검색어

느헤미야

문무왕

이자금지

채무면제

사회통합

## Prohibition of Interest and Debt Relief in the Era of Nehemiah and King Munmu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In Ancient Israel there existed the laws which prohibits charging interest and commands debt relief(Exod 22:24-26; Lev 25:35-38; Deut 23:20-21), and also the law which orders the remission of debt after 7 years(Deut 15:1-3). Debates have existed as to whether these startling enactments, which had a power to freeze economic relations instantly, were actually enforced, and whether these were realistic measures or not.

This article compares the cases of Nehemiah(Neh 5:1-13) with those of King Munmu of the ancient Shilla dynasty, who had implemented such laws. This article seeks to unveil the motivation and purpose lying behind these institutions.

www.kci.go.kr

The motivation lying behind prohibition of interest-charge and debt relief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Relief measures sought to save debt slaves, who, after having taken out loans because of poverty and starvation, fell into slavery. Natural disasters rendered them unable to pay back their debts. 2) The monarch sought to weaken the power of the political rivals and on the other hand to increase the power of the throne or ruling leadership by implementing the law of prohibiting interest and the law of debt relief. 3) Prohibition of interest and debt relief signaled 'brotherly love' and served as a mechanism of social unification. Further, these laws served as a method by which the poor could be helped while preserving their honor and dignity.

Therefore, while on surface level prohibition of interest and debt relief made little economic sense, in terms of political perspective and social unity, these laws not only were realistic but also served a purpose, that is to cure previous economic illnesses and produce a healthier economy. The understanding that such treatment was necessary to prevent community breakdown spurred members to enact such institutions.

Also, the implementation of such laws was made possible by the limited enactment in certain sectors, which is analogous to a partial and limited treatment of a particular disease, rather than all-out enactment throughout the entire econom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prohibition of interest and debt relief are realistic policies, capable of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need.

## Key Word

Nehemiah

King Munmu

prohibition of interest

debt relief

social unification

- 투고일: 2014년 1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01일